

# 교수친목회 회칙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회는 “해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수친목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애경사에 상부상조 하는데 있다.

### 제3조 (회원자격)

본 회는 본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를 회원으로 하며 겸임교수는 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 제4조 (사무처)

본 회의 사무처는 간사의 연구실에 둔다.

## 제2장 임 원

### 제5조 (임원)

본 회 임원은 회장1인, 부회장1인, 간사1인, 감사1인으로 구성한다.

### 제6조 (임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 ③ 간사는 본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본 회의 회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7조 (임원선출)

각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간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승낙을 받는다.

### 제8조 (임원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제3장 회 의

### 제9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10조 (정기총회)

정기총회 년 1회로 3월 넷째주 중에 개최하며, 본 회의 회계연도를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로 정한다.

### 제11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12조 (총회기능)

- ①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② 임원의 선출
- ③ 수입 및 지출 결산 보고
- ④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 제13조 (의결)

본 회 운영에 관한 모든 의결은 회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불참자는 회장단에게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고 위임자는 결의된 내용에 따른다.

## 제4장 사 임

### 제14조 (상조)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경조금을 전 회원(본인제외)으로부터 가출하여 지급한다.

#### ① 경사

1. 본인 결혼 : 4,800원
2. 자녀 결혼 : 2,400원
3. 본인 회갑 : 4,800원
4. 부모 회갑 : 4,800원

#### ② 애사

1. 본인 사망 : 12,000원 + 조화 100,000원
2. 배우자 사망 : 9,600원 + 조화 100,000원

3. 부모 사망 : 7,200원 + 조화 100,000원

4. 자녀 사망 : 4,800원(출산 후 1년 이상)

③ 위문

1. 7일 이상 병가를 얻어 와병중일 때 : 1,200원

2. 1개월 이상 병가를 얻어 와병중일 때 : 2,500원

3. 위 제1조, 제2조에 준하는 경위 회장단에서 판단하여 시행한다.

④ 휴직

1.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상 휴직할 때(단, 회원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에 한함) : 2,500원

2. 유학, 타 직장 파견 근무 등의 사유 : 지급안함.

⑤ 퇴직 : 회원 가입기간이 3년(36개월)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단, 아래의 산출방법에 있어서만은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산출함)

1. 일반퇴직

가. 영전, 유학, 전직 등의 발전적 사유 (근속년수 × 회원(본인제외)수 × 500원)

나.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 (근속년수 × 회원(본인제외)수 × 1,000원)

2. 정년퇴직 (근속년수 × 회원(본인제외)수 × 700원)

⑥ 기타 :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단에게 필요하다고 때 최소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재직 중 박사학위 취득 시 학위 기념패를 회장단에서 전달한다.)

⑦ 경사에서 부모는 직계 족손을 의미하며, 애사에서 부모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존속을 포함한다.

제15조 (경조금 각출)

경조금은 매월 10,000원씩 각출하며 기 잔액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고 지급사유와 기일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지급기일 이전의 월급에서 임시 회비를 각출 하며 기일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월급에서 부족금액을 각출한다.

제16조 (경조금지급)

경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또는 단시일 내에 본 회를 대표하는 자가 본인에게 지급한다. 지급 받을 사유가 예정되어 기일을 알 수 있을 때는 지급 받을 회원은 최대한 미리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애경사방문)

방문자가 흥성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회장단이 차량을 대절하며 불가피 할 경우에는 회장단은 최소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관공비)

회장은 본 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간사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매 학기 초 70,000원을 재정에서 지급 받는다.

제19조 (회원가입)

신규 가입자는 가입한 달에 입회비 50,000원, 1개월분을 포함하여 월급에서 6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제20조 (특별사항)

친목회 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결정된 사항을 집행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직원 친목회와의 상조)

사무직원 친목회 가입자의 애경사는 본회 지급액의 반액을 지급하되 다음의 사항으로 국한한다.

① 경사

1. 본인 경사
2. 본인 회갑

② 애사 : 본 회의 애사조항을 모두 적용함. 단 조화는 보내지 않음.

제22조 (환영회, 송별회)

신임교수 환영회와 퇴임교수 송별회는 회장단에서 주관하며 참석자는 회장단과 해당 계열 및 관련학과 교수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89년 정기총회의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외조항)

형제자매 결혼, 이사, 백일잔치, 돌등의 규약에 없는 경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9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9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9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